성주군 출산·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자 : 성주군수

2. 제안사유

○ 임산부 운전자를 배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, 지역사회의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장려 시책에 참여한 사업체와 기관, 단체 등에 재정적·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·표시·홍보에 관한 규정(안 제9조)

○ 출산장려 시책에 참여한 사업체와 기관, 단체 등에 대한 재정적·행정적 지원(안 제10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주차장법」,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등의 편의 증진보장에관한법률」,「저출산·고령화사회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23,000천원

다. 기 타

1) 입법예고 : 2015. 5. 28. ~ 2015. 6. 17.(의견없음)

2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3) 성별영향평가분석 : 해당없음

4) 보조금심의위원회 : 원안 가결(2015. 6. 12)

5. 검토내용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임산부 운전자를 우대하고 출산장려 시책에참여한 단체 및 사업체 등에게 행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서

○ 주요 개정내용으로는

-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· 표시· 홍보에 관한 사항과
- 인구의 날 행사, 출산장려 행사, 다문화가정 출산지원, 가족친화 분위기 조성 등 출산장려 시책에 참여한 기관 · 단체 등에게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사업 내용을 명시하여
- 지역사회의 임산부 운전자 배려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장려시책 참여 단체 등에게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서

○ 자치입법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므로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